

의안번호	2204122
의 퇴 인	김도읍의원
회 답 일	2024.11.12.
추계번호	24B1027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(육아 휴직)	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 및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(이하 “육아휴직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19조의7(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) 신설	사업주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거나,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 또는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 근로자가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,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등의 참여 목적으로 휴가(이하 이 조에서 “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”라 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함(제1항)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함(제2항)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(제3항) 사업주는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(제4항)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	의무규정
3	안 제39조(과태료)	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(제3항) 6의2. 제1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19조(육아휴직)	×	• 미첨부 –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– 본문 참조
2	안 제19조의7(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) 신설	—	• 미대상 –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, 예비양부모 양자 입양 휴가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2204126호)을 통하여 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하므로 중복 처리하지 않음
3	안 제39조(과태료)	—	• 미대상 –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되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, 이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육아휴직의 대상에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이므로,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개정안에 따른 사업대상자는 육아휴직의 대상에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아동이나,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이 2025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음
 - 참고로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제도는 예비양부모의 입양허가 재판 과정에서,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을 하는 제도임¹⁾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

1) 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“입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한다.”, 2023.06.30.